

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12.9.)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화승호]

목 차

1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3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5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37
6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	70
8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	82
9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	89
10	거창군농업회의소 출연(안) -----	95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11. 26.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11. 27.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함에 있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존속기한(2015.12.31.까지)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3. 주요골자

- 가. 법령 조항 변경(안 제1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을 제16조제8항으로 변경.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함(안 제4조)
 - “조언하게 하기” ⇒ “응하기”
- 다. 위원회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5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 2015년 12월 31일을 삭제함.

라. 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6조)

- 실·과 명칭변경에 따른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 신설: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마. 조례 명칭 변경(안 제18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2016년 예산 35만원(위원참석수당)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5. 10. 28.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존속기한(2015. 12. 31.까지)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8항”으로 법령 조항 변경.
 - **안 제4조[설치 및 기능]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조언하게 하기” ⇒ “응하기”로 용어를 순화함.
 - **안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2015년 12월 31일) 조항을 삭제함.
 - **안 제6조[구성]에서** 실·과 명칭변경에 따라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조항 변경.
 - **안 제18조[운영위탁]에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명칭변경.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109호, 2015.1.28., 타법개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69호, 2014.12.23., 일부개정]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13.]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69호, 2015.6.22.,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11. 2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11. 27.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로수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시적 명시하였으나, 우리 군의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안 제4조제1항)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
-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6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항 삭제.
- 다. 가산금 징수와 가산금 산정 조항 삭제(안 제14조제2항)
 -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삭제.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안 제14조 제3항)

- “부담금 또는 가산금” ⇒ “부담금”, “때에는 국세 또는” ⇒ “경우에는”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5. 10. 23. ~ 11. 1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4조제1항 단서)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로수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시적 명시하였으나, 우리 군의 가로수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제1항[가로수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함.
 - **안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항 삭제.
 - **안 제14조제2항[부담금의 강제징수]에서**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조항을 삭제함.
 - **안 제14조제3항[부담금의 강제징수]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부담금 또는 가산금”은 “부담금을”으로, “때에는 국세 또는”은 “경우에는”으로 용어를 순화함.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11. 26.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11. 27.

2.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2015. 7. 1.)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함(안 제2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7조, 제8조, 제12조, 제21조, 제25조)
 - “이라 함은” ⇒ “이란”,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당해” ⇒ “해당”,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각 호에 의한다.” ⇒ “각 호에 따른다.”
- 나. 문전수거 조항 삭제(안 제2조제12호)
 - 법령상 문전수거 정의가 없으므로 삭제.
- 다. 쓰레기봉투의 제작 납품 시 환경부가 제시하는 규격을 명시(안 제16조제4항)

- 공업진흥청이 1996년도 폐지됨에 따라 승인 조항을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규격에 적합함을 명시함.
- 라. 일반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수수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함(안 제23조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7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5. 10. 28.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2015. 7. 1.)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 ~ 제25조[용어 순화]에서 "이라 함은" ⇒ "이란",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당해" ⇒ "해당",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각 호에 의한다." ⇒ "각 호에 따른다."
 - 안 제2조제12호 중 "문전수거" 법령상 문전수거 정의가 없으므로 삭제.
 - 안 제16조제4항[쓰레기봉투의 제작]에서 공업진흥청이 1996년도 폐지됨에 따라 승인 조항을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규격에 적합함을 명시함.
 - 안 제23조제1호 중 일반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구체화함.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3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3038호, 2015.1.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

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5.1.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의,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⑫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⑬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⑭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⑮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준비 안내(지자체 준비사항) 2015.2.

-보건복지부맞춤형복지급여시행단

3. 「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자치법규 정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조례 등 정비

○ “수급(권)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규칙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어지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로 재편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의 경우 상기 4개의 수급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급여별 개편 내용

① 생계급여

-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인 중위소득 28% 이하 대상자들에 중위소득 28% 수준(‘17년까지 30%로 단계적 인상)의 생계급여를 지급

② 의료급여

-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현행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③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자들에게 주택개량 (자가 가구) 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최저주거기준을(전월세 25분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10~34만 원 수준

④ 교육급여 (교육부)

- 빈곤정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교육급여 지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08.8.4.] [법률 제8613호, 2007.8.3.,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 나. (생략)

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사항의 구체화(법 제25조제2항)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단계로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검토사항의 구체적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사항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등으로 정함.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자가 미리 검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생략)

◇개정문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거창군 도로점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11. 26.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11. 27.

2. 개정이유

-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7.15.)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도로법」 등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단순 확인·재기재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군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 「도로법」 제41조 ⇒ 「도로법」 제66조.
- 나. 실효성 없는 조문 등을 삭제함(안 제3조·제4조)
 - 징수의 위임, 점용의 허가신청
- 다.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을 변경함(안 제3조~제6조)
 -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도로법 시행령」 별표 3·4 적용
 - 점용료 부과징수 및 반환: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등 적용.
 - 점용료 감면사항: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점용료 감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6조·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70조·제71조·제73조, 별표 3·별표 4,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규제개선.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5. 10. 19. ~ 11. 18.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 7. 15.)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도로법」 등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단순 확인·재기재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군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 “「도로법」 제41조” ⇒ “「도로법」 제66조”

- **안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에서** 점용료 부과대상을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명시함.
- **안 제3조[징수의 위임]에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면 이중으로 부과할 수 있고 관리되지 못하며 군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항을 삭제함.
- **안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에서** 도로점용료의 허가신청에 관한 업무를 군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항을 삭제함.
- **안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를 제3조로 함**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별표1과 도로법시행령 별표3이 같으므로 별표1을 삭제하고 별표3을 적용하도록 개정함.
- **안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를 제4조로 함**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안 제7조[점용료의 조정]를 제5조로 함**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2와 도로법시행령 별표4가 같으므로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4를 적용하도록 개정함.
 - **안 제8조[점용료의 감면]를 제6조로 함**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점용료 감면 내용이 도로법과 상이하였으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 개정 시 감면내용을 신설 구체화하였음.
-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도로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8호, 2015.8.11., 일부개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4의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5.8.11.] [대통령령 제26483호, 2015.8.11., 일부개정]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

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별표 3] <개정 2014.11.24.>

점용료 산정기준 (제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소재지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반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압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22,000	81,350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4]

점용료 조정산식(제69조제3항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5.7.9.] [국토교통부령 제216호, 2015.7.9., 일부개정]

제36조(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15.4.16.] [법률 제12793호, 2014.10.15., 일부개정]

제1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개축·변경·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9조의2(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1.]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08.6.20.>

②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12., 2002.5.27.,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1993.12.31.]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3조의3(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1994.7.1.]

□ 규제개선 공문(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1376호(2015.4.01.))

정비대상 지방법규				개선사항
조례명	조문	주요내용	불합리 유형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5조	(2)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 점용료 부과규정 없음	1	도로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하고 “도로법령 적용한다”로 하여 법령 제개정에 따른 미반영사항 없이 즉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별표2	(3)조정산식 적용기준 상이	1	

※규제유형

- 1.제·개정사항미반영 2.위임범위일탈등 3.상위법령근거불비 4.위임사항소극적용 5.기타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11. 2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11. 27.

2. 폐지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14.5.21.시행)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직접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함.
 -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상위법인 「도로법」(2014. 5. 21. 시행)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117조,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규제개선.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5. 11. 01. ~ 11. 2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상위법인 「도로법」(2014. 5. 21. 시행)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거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도로법」

[시행 2015.7.7.] [법률 제12976호, 2015.1.6., 일부개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5.8.11.] [대통령령 제26483호, 2015.8.11., 일부개정]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다.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서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1호	50		
마.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4호	200		
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5호	200		
사.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50		

<p>아.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117조 제2항제6호</p>	<p>200</p>		
<p>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p> <p>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p> <p>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p> <p>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p> <p>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p> <p>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p> <p>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p> <p>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p>	<p>법 제117조 제1항제1호</p>	<p>50</p>	<p>70</p>	<p>100</p>
		<p>80</p>	<p>120</p>	<p>160</p>
		<p>150</p>	<p>220</p>	<p>300</p>
		<p>30</p>		
		<p>50</p>		
		<p>100</p>		
		<p>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p>		
<p>차.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p>	<p>법 제117조 제1항제2호</p>	<p>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p>		
<p>카.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p>	<p>법 제117조 제1항제3호</p>	<p>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p>		
<p>타.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117조 제2항제7호</p>	<p>200</p>		

파.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50
----------------------------------	----------------	----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거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정) 1990.10.23 조례 제116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 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규제개선 공문(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1376호(2015.4.1.))**

정비대상 지방법규				개선사항
조례명	조문	주요내용	불합리 유형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	(1)일시 무단점용 횡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18만원 부과	2	도로법령에서 과태료관련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조례폐지함.

※규제유형

- 1.제·개정사항미반영 2.위임범위일탈등 3.상위법령근거불비 4.위임사항소극적용 5.기타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11. 26.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11. 27.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측정방법 현실화(안 제20조제1항제2호)
- 나. 성장관리방안 수립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 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안 제22조제3호, 안 제24조의2)
- 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규정 신설(안 제28조)
- 마.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3조제4항)
- 바.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2)
- 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3)
- 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4)

- 자. 녹지지역의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5)
- 차.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6)
- 카. 축사 등 농업용시설 건폐율 상향조정(안 제57조)
- 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안 제61조의3)
- 파. 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안 제61조의4)
- 하. 군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 거. 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운영규정 신설(안 제73조, 안 제7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규제개선.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5. 11. 5. ~ 11. 25.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0조제1항제2호[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에서**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를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은”을 “제1항은”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 **안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 신설**

-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과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성장관리방안에는 교통처리계획과 주민편의시설계획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에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준용하며 도로 가시권의 옹벽·석축의 높이(노출부분)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 **안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를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 (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함.
- **안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신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 **안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
- **안 제53조제4항 신설**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 안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신설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안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신설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조항 신설.

- 안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시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신설

-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안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신설

-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안 제56조[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신설]

-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안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 안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서]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 안 제61조[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에서]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함.

- 안 제61조의4[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 완화 신설]

①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안 제63조[구성]에서 당연직 위원 중 “하천”업무를 “재해·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

- 안 제65조의2[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신설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재심의를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장과 제62조 사이에 제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 제72조와 제7장 사이에 제2절(제73조·제7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 **안 제73조[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4.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조항 신설
- **안 제74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정한다) 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③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별표 15부터 별표 19까지,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별표 15] 생산농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군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 별표 15 제6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 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유독물 보관·저장 시설과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마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영 별표20 제1호자목 (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나목, 다목, 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군이 설치 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에서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15.8.11.>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9.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2.7.1.] 제77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2.7.1.] 제78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6.15., 타법개정]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보전 용도 지역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7.6.>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14.\]](#)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7.31.\]](#)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

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삭제 <2014.1.14.>

나. 삭제 <2014.1.14.>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본조신설 2014.10.15.]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7.6.>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업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2. 삭제 <2005.1.1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⑨법 제78조제5항에서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3.23., 2014.1.14.>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1.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제목개정 2006.3.23.]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3

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는 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민원실무심의회에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민원실무심의회에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민원실무심의회에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에 심의를 생략하고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0.]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 〔 검토 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11. 2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11. 27.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및 시험인증분야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2016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국내 중소 승강기 제조기업의 수출전략화를 위한 종합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 업무 협약서 제3조(2014. 6. 23.)
 - 거창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3조(2013. 12. 20.)
- 대 상: 한국산업기술시험원(총괄책임자 강인구 센터장)
- 총사업비: 11,100백만원(국비 3,900 도비 2,750, 군비 2,850 민자 400 KTL 1,200)
 - 2016년도 사업비: 5,050백만원(국비 1,600 도비 1,150 군비 1,100 KTL 1,200)

2016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타 (KTL)
합 계	3,600	2,250	5,050	1,600	1,150	1,100	1,200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	3,500	2,150	3,750	1,600	1,150	1,000	-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사업	100	100	1,300	-	-	100	1,200

※ 국비 1,600백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수행함.

○ 사업내용

1. 승강기산업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 총수행기간: 2014. 9. 1. ~2017. 8. 31.(36개월)
- 총사업비: 9,800백만원(국비 3,900 도비 2,750 군비 2,750 민간 400)
- 세부사업 내용

가. Pilot 생산지원설비 구축: 승강기 완성품 및 부품의 시험 생산 및 시제작품 제작에 필요한 설비 승강기산업 지원 클러스터가 조성된 거창승강기R&D센터에 구축.

나. 중소기업 공동모델 개발: 중소기업 연합체를 통한 100% 순수 국산 수출전략형 승강기 시스템을 개발하며, 국제 규격(EN-81)에 부합하는 공동모델 제품 개발.

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승강기 제조기업간 자유로운 제품유통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승강기 제품(부품 및 시스템)의 분류체계를 규정하여 승강기 시장활성화 토대 마련.

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마케팅창구 개설·운영: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수출마케팅, 국내 승강기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현지기업과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상설 전담기능 구축.

2.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사업

- 사업기간: 2016. 1. 1. ~ 2016. 12. 31.

- 사업비: 1,300백만원(군비 100백만원, KTL 1,200백만원)

※ 거창승강기R&D센터 예산 1,300백만원 중 100백만원 군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가. 시험인증분야 신규 사업개발: 방화시험분야 KOLAS 획득,
공인시험 지원체계 구축, 방화시험설비(문세트시험장치)
보강 구축.

나.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내환경 시험장비 부대시설 구축,
장비 Upgrade 교정 및 유지관리.

4. 부서의견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 고도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출연금을 편성하였고
-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사업은 거창승강기R&D센터의 자립화를 위해 재정지원으로 거창승강기 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따라 거창승강기R&D센터 예산 1,300백만원 중 100백만원의 군비를 편성하였으므로
- 2016년에 예산 편성한 출연금 2,250백만원은 타당함.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및 업무협약서: 붙임 2

6. 검토의견

I. 승강기산업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그 간의 추진실적

가. Pilot 생산지원설비 구축

- 3차원 측정기 구입: 474,500천원(운영인력 2명 확보)
- 장비구축 공간 확보: 330m²(거창승강기R&D센터 생산지원동)
- 2차년도 장비구축 수요조사.
- 공동모델 제품 개발 사양 적정성 검토: 전문가 회의를 통한 기술사양 검토 지원.

나. 중소기업 공동모델 개발

- 공동모델 개발위한 신규 참여기관 선정: 2개 기관(수도권 1, 경남권 1)
 - 수도권: 중기특화형 엘리베이터 개발.
 - ⇒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금호엘리베이터 외 5개 기업
 - 경남권: 신형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개발.
 - ⇒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한국승강기대학교외 5개 기업.

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 운영 체계 개발.
 - 시스템 구성 범위 검토.
 - 분류체계 및 정보수집 방법 검토.
 - 사업비 산정 적정성 검토.
-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용역 조달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운영 프레임워크 설계 및 DB 구축.

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마케팅창구 개설

- 전담인력 확보: 해외 무역중계 경력자1명(사무공간 66m²확보)
- 승강기 전용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구축.
 - 사업자 선정 및 마케팅 플랫폼 구축 완료.

- 외국 현지업체 업무 네트워크 구축. 동남아 시장 개척 시장 조사 용역.

마. 기타

- 승강기관련 핵심 전략제품 발굴 및 정부과제 사업화 지원과제 수행.
 - 경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연구회 사업 선정: 100백만원.
 - 수출전략형 고속승강기급 핵심안전장치부품 기술개발: 1,341백만원.
- 기술지원 및 상담: 20건(해외인증 5, 마케팅지원 7, 시험평가지원 8)
- 기업지원 홍보 활동: 리플릿 및 판촉물 제작 등 배포(2,000여 명)

II. 협약서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은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기술시험원과 함께 승강기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상에 군비10억원을 지원하도록 협약된 사항이고,
- 거창승강기 R&D 센터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기술시험원, (재)경남테크노파크과 업무협약서를 검토 결과 거창군은 기업유치, 행정지원 인력파견 등 행·재정 지원 및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협약된 사항으로서 방화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1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임.
- 금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1억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붙임 1]_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사업명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및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 사업					
단체현황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거창승강기R&D센터)				
	기관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충무공동)				
	설립일	1966년 4월	대표자	이원복		
	업종	서비스 및 기술연구용역	대표번호	055-791-3114		
	기관형태	기타공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113-82-06228		
	기관소개	<p>(한국산업기술시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으로 시험인증과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p>(거창승강기R&D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KC안전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 제품개발 지원/ 해외인증 획득 지원 / 수출시장개척 지원 / 네트워크확대 지원 등 승강기분야 One-Stop 통합지원 솔루션을 제공. 				
총괄책임자	성명	강인구	직위	센터장		
	부서	기계시스템본부 승강사업센터 /경남지역본부(겸)	전화	055-940-6500		
사업기간	<p>총 사업기간: 2014. 9. 1 ~ 2017. 8. 31 (36개월)</p> <p>(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12개월))</p>					
사업비	사업명	계	2014	2015	2016	
	구조및 기술 고도화 사업	국비	3,900	1,000	1,300	1,600
		도비	2,750	500	1,100	1,150
		군비	2,750	750	1,000	1,000
		민자	400	100	100	200
		소계	9,800	2,350	3,500	3,950
	시험인 증사업	군비	300	100	100	100
		KTL	3,300	1,000	1,100	1,200
소계		3,600	1,100	1,200	1,300	
지방자체단체	지자체명	책임자	전화	실무담당자		
	경상남도	이한복 사무관	055-211-6432	강정훈 주무관		
	거창군	김성윤 계장	055-940-3701	이기용 주무관		
참여기관	참여기관명	책임자	전화	실무담당자		
	경남테크노파크	정순현 선임연구원	055-253-6414	정순현 선임연구원		
9) 실무담당자	성명	김재진	전화	055-940-6501		
	부서/직위	기계시스템본부 승강사업센터 / 연구원	휴대전화	010-2835-2812		

[붙임 2]_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58호, 2014.12.23., 일부개정]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5.20.>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1.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15.5.28.]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5.26., 타법개정]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30.]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수행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경상남도(이하 "도"), 거창군(이하 "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이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중 지방비(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수행 및 역할)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와 "군"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와 기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KTL"은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서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3조(사업비 교부 및 집행)

(1) "도"와 "군"은 본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필요한 예산(도비, 군비)을 교부 하여야 한다.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계	5,500	1,250	2,100	2,150	
도 비	2,750	500	1,100	1,150	
군 비	2,750	750	1,000	1,000	

(2) "도"와 "군"은 "사업비"교부후 사업수행이 미미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3) "KTL"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법령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정하는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정산)

"도"와 "군"은 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KTL"은 정산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사업 이행여부 확인 등)

“KTL”은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도”와 “군”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도”, “군”, “KTL”은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도”와 “군”이 “KTL”에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결과의 활용)

“KTL”은 거창승강기밸리의 발전을 위해 사업결과 성과물이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 (1) “KTL”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KTL”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도”와 “군”은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기타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확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에 각 기관의 장이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6월 23 일



경 상 남 도 지



거 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거창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경상남도(이하 “도”), 거창군(이하 “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재)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거창승강기 R&D센터(이하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 “군”, “KTL”, “경남TP”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승강기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체계)

“도”는 총괄책임기관으로서, “군”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KTL”이 주관기관이 되고 “경남TP”가 참여기관이 된다.

제3조(기관 역할)

- (1) “도”는 “센터” 전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인력파견 등 총괄책임
- (2) “군”은 기업유치, 행정지원 인력파견 등 행·재정 지원 및 관리·감독
- (3) “KTL”은 센터 관리·운영, 국비지원과제 및 기업지원사업 발굴 등 주관
- (4) “경남TP”는 국비지원과제 및 기업지원사업 발굴 등에 참여

제4조(조직 구성)

주관기관은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배치,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약당사자와 협의를 통하여 파견인력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유권 및 임대)

“군” 소유인 “센터”의 부지는 “경남TP”에 무상임대하고, “경남TP” 소유인 기업지원동과 시험연구동은 “KTL”에 무상임대하며, 테스트 타워 및 시험장비 등은 “KTL” 소유로 한다.

제6조(운영 책임자 임명)

“센터”의 운영 책임자는 주관기관이 “군”과의 협의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7조(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을 해지할 경우 1년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사항)

기타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확행을 위하여 협약서 4부에 각 기관의 장이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2월 20일



경 상 남 도 지 사

Handwritten signature



거 창 군 수

Handwritten signature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Handwritten signature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Handwritten signature

〔 거창군 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11. 2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11. 27.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 및 제9조
- 대 상: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장민철)
- 사업비: 24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2016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120	240	240	120	36	84	-

- 사업내용
 - 석분슬러지 광물화 연구
 - 석재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석재표면처리기술 응용 및 활성화

4. 부서 의견

- 석재산업의 애로사항인 석분슬러지의 처리와 석재표면 처리 기술 응용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지원사업이 필요함.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6. 검토 의견

- 석분슬러지 광물연구사업은 석분 슬러지를 이용하여 유리 제조업 및 세라믹산업 등에 사용되는 산업광물로의 원료 개발사업비 80백만원(국비 40 도비 12 군비 28)으로 사업추진.
- 석재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사업은 석재를 활용한 벽화, 패널, QR 코드 등을 지자체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문화관광콘텐츠개발사업으로서 사업비 80백만원(국비 40 도비 12 군비 28)으로 사업추진.
- 석재표면처리기술 응용 및 활성화사업은 칼라석재 등 기 개발된 석재표면처리 응용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석제품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사업비 80백만원(국비 40 도비 12 군비 28)으로 사업추진.

- 금번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연 출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84백만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전화번호: 055-940-3924		
					홈페이지: granite.go.kr		
주요연혁	법인허가: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5.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명		
임원 (‘15.10.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장민철	거창군청(군수 권한대행)				
	상임이사	김건기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비상임이사	조철효	경남도립거창대학				
		강찬홍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최일수	거창석재조합(주)				
		임진홍	거창석산협회				
		주우일	경남도립거창대학				
		김성호	한국승강기대학				
		홍세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창석	거창군청(승강기경제과장)				
	신판성	거창군청(산림녹지과장)					
감사	이상철	이상철 법률사무소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07
	예산액	200	200	200		부채	13
	지자체 지원액	200	200	200		자본	1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30				290		40

[붙임 2] 관계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 검토 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11. 2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11. 27.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장민철)
- 사 업 비: 20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2016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200	200	200	-	-	200	-

- 사업내용: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4. 부서의견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6. 검토의견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생산직원 2명, 총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00백만원의 출연금(인건비)을 출연해 왔음.
- 2015년도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직 3명 인건비 130,882천원, 기술직 2명 52,270천원, 연구직 및 기술직 연구활동비 9,500천원으로 총 192,652천원이 지급 되었으며
- 금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백만원의 출연금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근무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전화번호: 055-940-3924		
					홈페이지: granite.go.kr		
주요연혁	법인허가: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5.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명	
임원 (‘15.10.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장민철	거창군청(군수 권한대행)				
	상임이사	김건기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비상임이사	조철효	경남도립거창대학				
		강찬홍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최일수	거창석재조합(주)				
		임진홍	거창석산협회				
		주우일	경남도립거창대학				
		김성호	한국승강기대학				
		홍세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창석	거창군청(승강기경제과장)				
신판성	거창군청(산림녹지과장)						
감사	이상철	이상철 법률사무소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자본금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07
	예산액	200	200	200		부채	13
	지자체 지원액	200	200	200		자본	1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30				290		40

[붙임 2] 관계법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5. 11. 27.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5. 11. 27.

2. 제안이유

- 거창농업발전과 농정 파트너로서 거창군과 거창농업인을 대표하는 협의기구인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업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3조
- 대 상: 거창군농업회의소(대표 김제열)
- 사 업 비: 54백만원(출연 예정금액)

2016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54	54	54	-	-	54	-

- 사업내용: 종사자 인건비, 소식지 발행, 농업정보 수집, 농업농촌 발전 심포지엄 개최 등 회의소 주관사업 운영비 지원

4. 부서 의견

- 농업계의 보편·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위상제고를 위하여 농업회의소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붙임 1
- 관계 법령: 붙임 2

6. 검토 의견

- (사)거창군 농업회의소에 2012년 40백만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금으로 54백만을 지급해 왔으나, 2015년도 54백만원의 출연금을 출연해 왔음.
- 2014년도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보조사업 내용으로는 농업회의소 홍보 및 회원 관리, 회원교육사업운영, 위탁조사연구 위탁, 농업심포지엄 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정산서를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27,015,665원 중 12,460,000원, 정책실장 인건비 21,848,735원, 사무장 11,965,585원 중 2,151,265원이 보조금으로 36,460,000원, 시설비 46,193,400원, 총액 82,663,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내용에 부적합하게 정산처리하고 있음.
- 향후 출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교부 결정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용·집행하였는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금번 거창농업회의소 출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54백만원의 출연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근거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조례: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화번호: 055-943-5547		
					홈페이지: http://cafe.daum.net/943-5547		
주요연혁	2012년 4월 30일 거창군농업회의소 설립 2012~2015년 거창군농업회의소 분과토론회 2013~2015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 공모사업 진행 2014~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진행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5.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명		3명		명		
임원 (‘15.10.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회장	김제열	前 한농연 거창군연합회 회장		2015~2017 (3년)		
	부회장	추연백	前 거창낙우회 회장		2015~2017 (3년)		
	부회장	장병성	前 한우협회 거창군지부 사무국장		2015~2017 (3년)		
	부회장	강찬홍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지부장		2015~2017 (3년)		
주요기능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거창군 농업발전 추구						
자본금 (단위:백만원)		44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4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0
	예산액	75	99	135		부채	0
	지자체 지원액	40	54	54		자본	4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35				134		1

[붙임 2] 관계법령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12.03.26 조례 제20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창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 ① 거창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구성)

-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에 수익금 등
- ② 군수는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발전에 관한 사항
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 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조례 제2074호 2012.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